

장윤미 연구원

## 요약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기후위험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함.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탄소중립화를 법제화하며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금융업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탈탄소 및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 중인 바, 금융업권 관련 해외 제도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4월 뉴질랜드 정부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 활동이 기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후위험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고 의회에 상정함
  - 동 법안(금융부문 수정안)<sup>1)</sup>은 뉴질랜드 내 보험회사를 포함한 은행, 자산운용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투자 활동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리스크관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함
  - 기후위험 관련 공시 대상자는 기후위험에 관한 보고서(statement)를 작성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약서(assurance engagement)를 취득해야 하며,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됨(〈표 1〉 참조)
-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탄소중립화<sup>2)</sup>를 법제화하며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금융업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탄소제로법(Zero Carbon Act)을 통과시키고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탄소중립화 정부를 만들 것을 선언한 바 있음
    - 뉴질랜드 외에도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달성할 것을 법제화함
  - 뉴질랜드 금융업계는 기후위험으로 인해 물리적(기후이변에 따른 재물 피해 및 공급망 중단 등에 따른 손실) 및 과도기적 손실(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제 변화, 소비자·투자자 선호 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뉴질랜드 기후위기 장관은 뉴질랜드 금융업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 공시 필요성을 언급해옴

1) 법안의 공식명칭은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임

2) 탄소중립이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sub>2</sub>)의 순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산림 등) 및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제로)이 되는 개념임

〈표 1〉 뉴질랜드 ‘금융부문 수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 뉴질랜드의 대형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형 은행, 은행 외 대형 예금취급기관,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증권 발행기관 및 대형 외국계 기업 등으로 공공책임 수준이 높은 기관 <sup>3)</sup>
내용	• (보고서 작성) 기후위험 관련 공시 대상자는 연차보고서에 해당 기업이 기후위험 관련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기후위험 관련한 내용과 계획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보증확약서 취득) 공시 대상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안에 관한 이행의 의미로 보증확약서를 취득해야 함 <sup>4)</sup> • (미이행 시 제재) 기후위험 관련 공시 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 <sup>5)</sup>

자료: 뉴질랜드 의회 웹사이트 내 ‘금융부문 수정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법안 통과 시 2023년부터 기후위험에 관한 첫 공시가 시작될 예정으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금융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국가가 됨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 대상 금융기관은 2022년부터 기후위험 관련 활동을 기록하고 2023년 첫 공시를 시작할 예정임
  - 공시를 통해 금융기관 투자자 및 주주는 해당 기관의 기후위험 관련 사업 활동을 진단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뉴질랜드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음
  - 유럽연합,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이 은행권에 기후위험 관련 대응책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이를 의무화에 나선 건은 뉴질랜드가 최초임
- 우리나라도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탈탄소 및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 중인 바, 금융업권 관련 해외 제도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다음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임(세계 7위)<sup>6)</sup>

3) 대형이란 자산이 10억 뉴질랜드 달러(약 8,000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정의됨. 뉴질랜드에서 약 200여 개 기관이 해당되는데, 이는 동 국가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약 90%를 포함하는 수준임

4) 보증확약서는 자격을 갖춘 기후 관련 공시 보증실무자가 인증하고 있으며, 보증실무자란 뉴질랜드 금융시장당국이 기후위험 관련 공시 보증 기관으로 인증하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함(관련 내용은 동 법안의 section 461ZD 및 461ZE 참고)

5) 규정(기후위험 관련 기록물 보관 의무, 기후위험 관련 보고서 준비 및 제출 의무,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이에 관한 보증확약서를 제출할 의무 등을 포함)을 위반하면 민사책임과 함께 개인에 대해 최대 100만 뉴질랜드 달러(약 8억 원), 기타의 경우는 5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6) <http://energyatlas.iea.org/#/tellmap/1378539487>